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달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4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1.

발의의원 : 신달호 의원,

박주용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제안이유

저출생 극복과 일·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’25.2.11.일부개정·시행)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’25.2.7. 일부개정, ’25.2.11. 시행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연가일수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방지와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특별휴가(새내기 도약휴가)를 부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불가 규정 삭제(안 제15조제8항)
- 나. 저연차 공무원 대상 새내기 도약휴가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11항)
- 다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(10일→20일(다태아 25일))(별표 5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8항 중 “없으며, 그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”를 “없다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.

별표 5의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“10” 을 “20(다태아 25일)” 으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(2024.12.31. 일부개정·시행)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(대통령령)」(2025.2.11. 일부개정·시행)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② 제1항에서 “재직기간”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, 연월일수(年月日數)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, 휴직기간·정직기간·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
2.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3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(이하 “공무상 부상등”이라 한다)으로 인한 휴직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[별표 1] (개정 2025. 2. 11.)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
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
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(행정안전부예규)」(2025.27. 일부개정 2025.2.11. 시행)

(5) 육아시간

(가)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
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

(다)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·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

(개정 2024. 11. 29.)